

국방부 청렴음부즈만 활동 알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18. 10. 23. (화) 제1기 국방부 청렴음부즈만 5인을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그 간 청렴음부즈만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권고한 내용과 개략적인 진행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청렴음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청렴음부즈만

성명	소속 / 직책	연락처
 이상범	前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 심의관 (국장) 現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청렴 음부즈만 사무실 02-748- 0924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前 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現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청렴음부즈만 회의

㉑ 청렴음부즈만 제1차 회의 '18. 10. 23.(화)



- 대표청렴음부즈만 선정 : 이상범 (前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퇴직자)
* 연장자 및 반부패 청렴업무 경력을 고려, 호선으로 결정
- 회의개최 : 매월 2회(2·4주차 목요일) 개최 원칙
- 사건배당 : 접수 사건별로 담당을 배정하는 주심제도 운영

㉒ 청렴음부즈만 제2차 회의 '18. 11. 15.(목)



-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청렴서약서 작성
- 타 기관 청렴음부즈만 제도 운영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회의 운영방안 제시
- 국방부 청렴음부즈만 훈령 검토
- 내부신고 피해자 식별 방법 및 향후 처리 방향 논의
- 청렴음부즈만에게 접수된 제1호 신고 사건 검토 및 향후 처리 방향 논의

< 청렴음부즈만 권고 내용 >

- 청렴음부즈만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됨에 따라 청렴음부즈만 훈령 제6조 제3항 개정방안 논의
- 청렴음부즈만에게 접수된 제1호 신고 사건의 내부공익신고 피해자 징계절차 일시 중단 권고

㉓ 청렴음부즈만 제3차 회의 '18. 11. 29.(목)



- 청렴음부즈만 훈령 제6조 제3항 개정 권고
- 청렴음부즈만에게 접수된 추가 신고 사건 검토 (2건)
* 검토 결과 : 국방부(해군) 자체 조사 종결
- 2호사건 국방부 자체조사 종결
- 3호사건 방위사업청 음부즈만에게 이첩

< 청렴음부즈만 권고 내용 >

- 훈령 제6조제3항은 청렴음부즈만을 운영하는 기관의 모든 훈령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규정 삭제 시 음부즈만의 직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므로 향후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훈령 제6조 제3항(직무) 개정을 권고

현행	개정
제6조(직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음부즈만 직 무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 ③ ----- ----- ---청렴음부즈만 직 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㉔ 청렴음부즈만 제4차 회의 '18. 12. 13.(목)



- 2018년 국방부 청렴도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국방부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정책고객 평가 5등급)

< 청렴음부즈만 자문 내용 >

-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공개범위 확대, 계약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악성 비위행위자 발생 부대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비 사용내역 구체적 작성 및 공개 대상 확대 추진
- 정보공개 확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추진 등

㉕ 청렴음부즈만 제5차 회의 '18. 12. 27.(목)



- '18. 12. 26. 계약 체결된 청렴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 제시
* 용역명 : 청정국방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방향 연구
- 청렴음부즈만에게 접수된 추가 신고 사건 검토 (1건)
* 검토 결과 : 국방부(해군) 자체 조사 종결
- 청렴음부즈만에게 접수된 제1호 신고 사건의 내부공익신고 피해자 신분보장 조치 요구사건 조사계획 수립 및 신고자 관련 징계서류 검토
- '19년 국방부 청렴음부즈만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토의

☞ 청렴음부즈만 직무 범위 소개 ☞

- 근거 : 훈령 제6조(직무)
- 내용
 - 주요사업 감시·조사·평가
 - 민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 ※ 각 국실에서 상기와 관련하여 청렴음부즈만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감찰과 청렴담당 <6915,6916>에게 연락 바랍니다.